

##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1호 중 “우편물의 통신일부인(通信日附印)에서”를 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”를 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”로, “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”을 “우체국에 제출한 날(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208조제7항 전단 중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